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교과용 도서의 개념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교과서나 지도서는 이미 국정교과서(지도서)이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마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u>부장관이</u> <u>검정하거나</u> <u>인정한 것을 말한다.</u>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u>학생용의 도서</u>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u>교사용의 도서</u>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u>학생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u>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u>교사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u>
--	--	---

2. 서책 외에 교과용 도서로 인정할 수 있는 매체의 범위(안 제29조제2항)

안 제29조제1항에서는 ‘도서(서책)’로만 교과용 도서를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교과서와 지도서의 범위에 서책 뿐 아니라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¹⁾ 따라서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책’을 교과용 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의 ‘인정’이라는

-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단어가 ‘인정 교과용 도서’의 인정과 동일한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 현행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 도서가 반드시 서책 형태의 교과용 도서와 내용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 안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수 있는 음반·영상·전자책이 교육부장관의 검정·인정 등을 거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 약칭인 ‘전자책’이 음반이나 영상까지 포괄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설>	제29조(교과용 도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3. 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안 제29조제3항)

안 제29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서책)를 사용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도서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책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검정이나 인정을 거쳤거나 국가가 편찬한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은 이미 동법 제32조²⁾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전자책 등이 서책형 교과용 도서의 대체품이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 이미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인정하거나 편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9조(교과용 <u>도서</u> 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③ -----제1항에 따른----- ----- ----- ----- ----- 다만, <u>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u>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제29조(교과용 <u>도서</u>) ③ -----제1항에 따른----- ----- ----- ----- ----- 다만, <u>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되거나</u>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2)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도서를 사용하여 한다. <단서 신설>	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	---------------------------------------

4. 교육자료의 정의 등(안 제29조의2제1항)

안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자료”를 ‘저작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³⁾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이는 안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게 되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자료의 의미상 교과용 도서 역시 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자료는 교과용 도서 외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

3)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u>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

5.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 활용 (안 제29조의2제2항)

안 제29조의2제2항은 학교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자료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은 이미 동법 제32조4)에 규정되어 있다는

4)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자료를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5)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부칙

현행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신법·구법의 변경 과정에서 구법의 효력 일부를 신법의 시행일 이후까지 미치도록 하는’ 경과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아울러, 안 부칙 제2조의 단서에서는 신법에서 교과용 도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료 중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자료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과용 도서가 아닌 자료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2조6)(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안 제29조의2제2항에도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본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또한, 안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인용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⁷⁾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6)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교과서(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의 보급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과학 교과 교육 방법 고도화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 설>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 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 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Ⅲ. 교육부 의견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첫째, 개정안 제29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의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시행시기를 2026년 9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1조 단서 신설)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즉시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니게 되나,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25년 2학기까지는 기존에 검·인정되어 사용하던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개 정 안	수정의견	교육부 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단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중 2024년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전문위원 이 은 정)